



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

업무협약서



서울교통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하 “공단” 이라 한다)은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단과 공사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협력분야)

1. 양 기관의 인적자원 상호 지원
2. 승강기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협조
3.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
4.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위한 홍보 협업
5.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

제3조(협력 방법) 양 기관은 협력분야 추진에 대하여 인적·물적 자원을 상호 제공하며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협약해석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따르며, 협력분야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해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 사항을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할 수 없다.

제6조(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)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 어느 한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2월 17일

서울교통공사
사 장

한국승강기안전공단
이 사 장